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가단1317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호(소송구조)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0. 11. 24.

판 결 선 고 2020. 12. 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2015. 7. 28.부터 2017. 2. 10.까지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합계액 86,947,000원)을 24,659,8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1,321,792원, 원고 B에게 13,338,01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D는 ‘산양산삼을 재배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발생하므로 투자를 하면 매일 일정액씩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E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후 2011. 7. 14.부터 2011. 10. 17.까지 E 등으로부터 합계 19,090,000원을, 2011. 7. 13.부터 2011. 10. 17.까지 원고 B로부터 합계 41,900,000원을 투자받았다. D는 위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와 같은 D의 E과 원고 B에 대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D는 그 불법행위로 인해 E과 원고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투자 이후 D가 배당금 명목으로 E과 원고 B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하면 E이 입은 손해액은 9,725,400원이고, 원고 B가 입은 손해액은 11,457,000원인데, 이 각 손해액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까지의 이자액을 더하면 E과 원고 B가 입은 손해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한편 원고 A은 2017. 11. 4.경 E으로부터 투자금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았는데, D는 원고 A에게 11,321,792원, 원고 B에게 13,338,014원과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 D는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나 투자금반환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5. 9. 15. 혼인신고를 마친 피고에게 자신의 돈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증여함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였는바, D가 2015. 7. 28.부터 2017. 2. 10.까지 사이에 피고를 상대로 한 각 증여계약(합계액 86,947,000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서 2015. 7. 28.부터 2017. 2. 10.까지 체결된 각 증여계약(합계액 86,947,000원)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인 24,659,806원(= 11,321,792원 + 13,338,01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 A에게 11,321,792원, 원고

B에게 13,338,01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영농조합법인의 수익구조상 약정한 대로의 원리금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금을 내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매일 일정액씩 배당금을 지급하여 투자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E과 원고 B로 하여금 2011.

7. 이후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 이러한 D의 유사수신행위로 E이 입은 손해액이 9,725,400원이고, 원고 B가 입은 손해액이 11,457,000원이며, E이 2017. 11. 4.경 원고 A에게 투자금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사실, 피고가 2015. 9. 18. D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 D가 2015. 7. 28. 피고에게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0.까지 사이에 합계 86,947,000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1) 그러나 피고는 D가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2013. 10.경 20,000,000원을 F은행에서 대출받아 빌려주었고 2013. 11.경 및 2014. 2.경 카드론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 역시 D에게 빌려주었으며,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광명시 G에 있는 주택을 전세주고 받은 전세보증금까지도 D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D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증여가 아니라 위에서 본 대여금을 일부 변제받은 것이거나 결혼 후 생활비를 받은 것을 불과하다고 다툼고 있다.

2) 그런데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D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5. 7. 28.부터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2017. 2. 10.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일정 금액씩 송금된 내역을 통해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데, 송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갑 제3, 4호증이나 피고 및 D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의견이 기재되었을 뿐인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송금행위가 D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나 D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오히려 피고가 D와의 혼인생활 이전에 받은 대출금 중 일정 금액을 D에게 대여한 후 그 대여금을 변제받았을 가능성 또는 송금된 금액의 규모나 송금 횟수 등에 비추어 혼인생활 중에 생활비로서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희